

# 저작권법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저자: 정상조  
발행년도: 2000

문헌: 지적소유권법연구

권호: 4집 (2000년)

출처: 한국지적소유권학회

[95]

## 《목 차》

- I. 머리말
- II. 저작물
  - 1. 저작물의 개념과 종류
  - 2. 응용미술저작물
  - 3. 데이터베이스 저작물
- III. 저작권
  - 1. 전송권
- IV. 저작권의 제한
  - 1. 도서관에서의 복제 등
  - 2. 사적 복제
  - 3. 사적복제보상금
- V. 저작권의 등록
- VI. 결 론

## I. 머리말

금번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디지털시대의 효율적인 저작권보호를 위해서 상당수의 조문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다. 저작물의 개념 및 종류에 있어서는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실용품에 복제되어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과 캐릭터 등을 포함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게 되었고(저§2), 저작권의 내용에 있어서는 소위 "전송권"을 신설하고(저§18-2) 공연과 방송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게 되었다(저§2). 저작권의 제한에 있어서는 도서관에서의 복제와 사적이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동시에 소위 사적복제보상금에

[96]

관한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다(저§27, §28). 또한, 저작권등록제도를 개선하고 저작권등록에

대해서 과실추정의 효과를 부여하게 되었으며(저§51, §53, §93), 저작권위탁관리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2)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명문의 규정과 저작권침해에 관한 벌칙의 강화 등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강화를 위한 개정을 하게 되었다(저§93, §93-2, §98).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개정 또는 신설된 법규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규정은 "전송권" 및 "사적복제보상금"에 관한 규정일 것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는 입법상의 커다란 문제점이 보인다. 예컨대 전송권을 신설하면서 그와 유사한 방송권 및 배포권, 공연권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련규정에 관한 면밀한 개정이 동반되지 아니하였고, 특히 저작인접권자에 전송권이 주어지는지 그러한 전송권이 제한되는지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도입되지 아니한 중대한 입법적 흠결이 보인다. 또한, 사적복제보상금에 관한 규정에서는 어느 범위의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사적복제보상인지 포괄적인 복제보상의 제도인지 알 수 없고, 동시에 개정안은 사적복제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지만 복제보상금제도가 도입된다면 굳이 사적복제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시 되고 더 나아가 사적복제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한 결과 복제기기 또는 매체 제작업자로서는 사적복제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복제기기 및 매체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2/100 범위 내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게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내용을 조문별로 상세히 검토해 보도록 한다.

## II. 저작물

### 1. 저작물의 개념과 종류

저작물(copyright work)이라고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 또는 저작권의 권리객체를 말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개념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 규정에 의하면 '저작물'이라고 함은 '문학·학술

[97]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저작권법상 저작물(copyrightable subject matter)의 개념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①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고, ② '창작적인 것'이어야 하고, ③ '창작물'로서 '사상·감정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주1)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저작물에 해당되는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저작권법 제4조](#)는 저작물의 종류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이 가운데 응용미술저작물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을 별도의 저작물로 열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저작물의 산업적으로 응용되는 저작물을 널리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을 하는 것이 저작물의 개념정의 가운데 '문학·학술·예술의 범위'에 속해야 한다고 하는 개념규정과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음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세계 각국의 저작권법의 오랜 역사를 보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사진,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순차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새로이 추가되어서 저작물 개념이 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 '문학·학술·예술의 범위'에 속해야 한다는 것을 저작물의 개념 속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재음미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 2. 응용미술저작물

현행 저작권법은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작품 등이 미술저작물(artistic works)로서 보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응용미술작품이 어떠한 범위의 저작물을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저작권법 개정안 이러한 논란의 여지를 줄이고 보호대상에 해당되는 응용미술작품의 범위가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개념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우선, 응용미술작품의 개념을 둘러싸고 제기된 분쟁사례를 간단히 소개하고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응용미술작품의 문언적 의미는 산업에 응용되는 미술작품을 널리 뜻하는 것이므로 평면적이거나 입체적인 산업디자인이 널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우리 대법원도 예컨대 한복디자인(문양)

[98]

도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고, 주2) 롯데월드가 홍보용으로 제작의뢰하여 완성된 너구리도안도 미술저작물로 보호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주3) 그러나 다른 한편, 대법원은 서체도안(글꼴), 즉 "한 벌의 문자·숫자 등에 관한 창작적인 형태의 디자인"이 심미감을 형성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서체도안의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 별도로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서체도안은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 주4) 또한, 직물도안이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로 된 사건에서, 응용미술에 해당되는 도안에 대해서 의장법 외에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게 되면 신규성 요건이나 등록 요건, 단기의 존속기간 등 의장법의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의 취지가 몰각된다고 전제하고, 대법원은 산업상의 대량생산에 이용할 목적으로 창작된 직물도안은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주5)

서체도안과 직물도안의 저작물성을 부인한 대법원판결에 대해서는 찬반의 논란이 많이 있었고 입법적인 해결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특히, 특허청은 이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을 했는데, 직물도안이 신속한 의장권등록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997년에 의장법을 개정하여 의장무심사등녹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는 뒤늦게나마 금번의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응용미술저작물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는 개념규정을 두어서 직물도안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산업디자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이 대법원판결을 의식해서 산업상의 대량생산에 이용되는 디자인도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은 진일보 한 규정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캐릭터라고 하는 외래어를 개념정의 없이 열거해서 규정한 것은 과연 무엇이 캐릭터인지에 관한 또 다른 개념적 혼동을 초래하고 영미법상의 캐릭터(Character)는 당해 캐릭터의

[99]

디자인뿐만 아니라 소설, 만화, 영화 등에 등장하는 가공 또는 실존의 인물, 동물, 로봇, 외계인 또는 기타의 도형의 명칭, 외형, 성격, 형태, 목소리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인 바 어디까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전혀 그 입법의도를 알 수 없다. 또한, 개정안의 개념정의만으로는 서체도안이 보호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어서 산업디자인의 저작권법적 보호에 관한 완전한 입법적 해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한 규정이다. 특히, 산업디자인의 저작권법적 보호에서는 가장 문제되는 것이 그 보호기

간의 제한이라거나 소비자 또는 경쟁업자의 이용의 원활화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 그리고 의장법과의 조화를 위한 규정의 도입 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금번의 개정안은 그 어느 하나도 시도한지 아니한 소극적이고 미흡한 개정에 불과하여,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Font 산업(주6) 등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 3. 데이터베이스 저작물

저작권법 개정안은 데이터베이스를 새로운 종류의 저작물로서 열거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편집저작물로서 창작성을 갖춘 경우에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은 현행 저작권법하에서도 이미 인정되고 있는 바이다. 현행 저작권법하에서 문제되는 것은 첫째, 어떠한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법상의 창작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겠는가 하는 창작성 요건 충족의 문제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편집저작물의 보호요건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의 창작성을 규정하고 있고, 종이책의 경우에는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의 창작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는 전화번호데이터베이스거나 법령데이터베이스이거나 그 속성상 관련된 정보를 모두 포함시키게 되기 때문에 소재의 선택에 창작성을 요구하기는 어렵고, 만일에 제한된 범위의 소재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기준이 창작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객관적이

[100]

고 이용자에게 널리 알려진 선택기준으로 선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작성을 갖춘 선택이란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또한, 종이책의 경우에는 그 소재들이 종이 위에 평면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배열의 창작성이 쉽게 판단될 수 있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는 그 소재되는 데이터들이 모두 컴퓨터의 디스크나 테입 속에 단순히 집적되어 있을 뿐이고, 창작적인 배열과는 전혀 관계없이 저장되어 있다가 컴퓨터의 검색·출력 프로그램의 도움에 의하여 비로소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출력되어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소재의 배열은 아무런 창작성도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보다 넓게 파악해서, 검색·출력 프로그램까지 포함된 자료 집합물이 데이터베이스라고 보고 동 검색·출력 프로그램에 의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배열방식으로 출력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면, 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재 배열의 잠재적 창작성이 존재한다고 보아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국내사례로는, 사인이 편집해서 제작한 법령데이터베이스가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된 바가 있고, 주7) PC통신을 통해서 검색이용할 수 있는 '입찰정보데이터베이스'가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갖춘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하급심결정이 있다. 주8) 그러나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저작물로서 보호하는 경우에도 컴퓨터 속의 데이터들은 아무런 창작적 배열없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그러한 데이터를 모두 출력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한 후 다시 새로운 검색·출력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용자들이 새로운 배열방식으로 출력할 수 있게 해준다면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되고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개발업자는 투자회수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이와 같이 어려운 문제로 제기된 데이터베이스의 창작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단순히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

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가 창작성

[101]

을 결여하고 있더라도 그 데이터의 수집과 입력에 많은 자본과 시간을 투입한 경우에 그러한 투자를 보호해 줄 필요성은 절실하기 때문에, 창작성을 결여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인정하는 외국입법례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 III. 저작권

#### 1. 전송권

개정안은 "전송권"을 신설했다(저§18-2). 전송권이라고 함은 일반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송신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저§2). 1996년 12월에 채택된 세계저작권기구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 및 음반·실연 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은 디지털 저작물의 유통에 대응하여 "공중전달권(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주9) 개정안은 그러한 조약규정을 반영해서 전송권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전송권은 쌍방향적인 통신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정보의 일방적인 전달을 특징으로 하는 기존의 방송권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의 전송권은 1998년에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이미 도입된 저작권인 바, 기존의 복제권이나 배포권 또는 방송권이 컴퓨터통신을 통한 저작물의 유통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에도 새로이 도입된 권리인 것이다. 본래, 컴퓨터통신을 통한 저작물의 송신이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에 송신자와 수신자의 컴퓨터에 동일한 내용의 디지털화일이 복제되기 때문에, 컴퓨터 송신을 복제권이나 배포권의 문제로 파악할 수도 있고 컴퓨터 송신도 일반공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송권 문제로 파악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복제는 전송에 수반되는 행위일 뿐이고, 배포는 유체물의 점유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전송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개념이며,

[102]

방송도 쌍방향적인 정보의 유통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과는 상이한 개념이기 때문에, 컴퓨터 통신을 통한 저작물의 유통에 적합한 새로운 개념으로 전송권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전송권은 기존의 배포권과는 달리 전통적인 의미의 점유이전이 없기 때문에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또한, 전송에 있어서 공중의 개념은 다수인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의 개인에게 E-mail 등의 방식으로 통신을 하는 것은 전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전송은 복제·배포·방송과 유사하지만 구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송권을 새로이 도입하면서 개정안은 방송에 관한 기존의 법규정을 대부분 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커다란 아쉬움을 남겨준다. 첫째, 디지털방송이나 video-on-demand와 같은 새로운 통신서비스가 등장하는 경우에 배포·방송·공연의 어느 개념으로 포섭할 수 있을지 그 개념정의가 아직 불분명한 바 그에 관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 종전부터 지적되어 온 것이지만 종합유선방송과 저작권법상의 방송이 동일한 개념으로 포섭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상 유선방송사업자에 의한 재송신에 관한 저작권의 제한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앞으로 새로이 개발되는 다양한 서비스의 경우에 더욱 그 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개정안은 전송권을 도입하면서 가수와 음반제작자에 관한 규정에서는 전송권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저작인접권의 내용으로 복제나 방송 이외에 전송에 관한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가수 등의 실연이나 음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허락없이 이용하되 보상만 하면 되는 것인지 극히 불분명한 상태로 남게 된다. WIPO음반·실연조약 제10조 및 제14조는 전송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특히 동조약 제15조는 전송보상청구권을 규정하면서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단일의 보상금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하면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의 문제는 국내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금번의 개정안에서 반영되었어야 할 사항인 것이다. 최근에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된 MP3화일주10)의 전송은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에서 전송에 관한

[103]

권리규정 및 권리제한과 보상청구권 규정을 두지 아니하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인 바, 개정안은 이에 대해서 묵묵부답일 뿐인 것이다.

## IV. 저작권의 제한

### 1. 도서관에서의 복제 등

도서관에서의 복제는 종전부터 저작권의 제한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개정안은 두 가지의 중요한 개정을 하고 있다. 첫째, 개정안은 도서관에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가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 뿐만 아니라 개별 저작물의 전체를 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아마도 논문집과 같이 다수의 개별저작물이 모여서 하나의 도서를 구성한 경우에 하나의 개별저작물 즉 논문 한편 전체를 1인 1부에 한해서 복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법규정만 보아서는 논문집 전체를 복제해도 무방한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개별저작물로 구성된 도서의 경우에 일부의 개별저작물에 한해서 전체를 복제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한 법조문표현의 보완이 필요하다. 논문집 전체의 복제는 당해 논문집을 시중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개정은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이용과 관련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이 관내에서 컴퓨터를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허용하는 규정일 것이다. 이제까지 도서관이 소장 도서를 디지털화해서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했고 현행법하에서는 그러한 행위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루어진다면 복제권 및 배포권의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컸다. 그러나 컴퓨터의 대중화에 따라서 기존의 도서관이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개정안은 [저작권법 제28조](#)를 개정해서 "도서관 등은 관내에서 이용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복제 전송

[104]

할 수 있다"고 규정하게 된 것이다. 다만, 종이책의 경우에는 관외대출을 허용해도 무단복제

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대출도서의 시장을 잠식하거나 그 판매량을 떨어뜨린다고 보기 어렵지만,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관외로 전송해서 일반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일반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도 당해 저작물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당해 저작물의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된다. 따라서 개정안은 그 저작물의 복제물이 관외에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 저작물이 관외에서 이용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 즉 디지털 저작물의 관외전송을 금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내에서 복제한 디지털 저작물의 관외이용을 금지하는 것인지 명백하지 않다.주11) 도서관 내에서 일부복제가 허용된다면 디지털 저작물의 경우에도 그 일부복제물을 관외에서 연구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금지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물론 디지털저작물의 복제물을 만들어 나온 도서관 이용자가 그 복제물을 다시 복제해서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해석되고 그러한 측면을 저작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사적 복제

사적 복제라고 함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가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저§27). 금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적 복제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저작물 복제를 사적복제허용 범위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사적복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복제를 제외시킨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사적 복제가 왜 저작권의 제한으로서 허용되어야 하는지부터 김

[105]

토해볼 필요가 있다. 사적 복제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정 등에서 하는 복제이기 때문에 그 적발이 어렵고 복제량도 소량에 미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심각하게 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복제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사적 복제가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심각하게 해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못하게 되었고, 사적 복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청되게 되었다.

아마도, 개정안이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복제를 사적 복제의 범위에서 제외시킨 것은 이러한 복제기술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일응 보여지지만, 그 타당성은 의문시된다. 공중용 복사기의 경우에 문제되는 것은 사적 복제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량복제에 의한 저작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고 이는 사적 복제의 범위 축소에 의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침해단속과 책임부과에 의해서 해결할 문제인 것이다.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복사를 일률적으로 사적복제의 범위에서 제외시킨다면 개인적인 복제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으로서 순수한 연구 등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해도 복제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또한, 현재 사적복제의 문제점은 도서관에서의 복제와 비교해볼 때 그 허용되는 복제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에 없다는 점이다. 도서 전체 또는 프로그램 전부를 복제한다면 아무리 개인적인 목적의 복제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무제한의 사적복제가 다수의 개인에 의해서 반복된다면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

익을 심각하게 해하는 것으로서 사적 복제의 본래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적 복제의 제한은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복제를 제외시키는 일본식 해결방법이 아니라<sup>12)</sup> 사적 복제의 명확한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아날로그·디지털 복사기를 운영하여 일반공중에게 복사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자에게도 보상금을 부과함으로써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사적 복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문화관광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복사기운영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106]

### 3. 사적복제보상금

개정안은 복제기술 발달에 따른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디지털 기기·매체에 대한 사적 복제보상제도 도입하고 있다. 디지털 복제기기는 완벽하게 동일한 복제물을 용이하게 제작해 주기 때문에, 디지털 복제기기 또는 매체 등에 대해 일정한 보상금을 부과·징수·분배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디지털 기기·매체에 대해서 그리고 독일 등 유럽국가들은 아날로그·디지털 기기·매체의 제작업자와 그 운영업자 모두에 대해서 사적복제보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디지털 녹음·녹화기 또는 매체를 국내에 수입 및 배포하거나 국내에서 제작 및 배포하는 자에게 기기 또는 매체의 최초 배포가액의 2/100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이 새로이 도입한 사적복제보상금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적복제의 범위를 축소했기 때문에 과연 그로 인해서 보상금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시 된다. 참고로,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모범이 되고 있는 독일 저작권법은 우리 나라 저작권법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사적 복제를 규정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금의 부과 및 분배를 규정하고 있다.<sup>13)</sup> 둘째, 개정안은 사적 복제에 이용되는 복제기기 및 매체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부과한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종류의 복제기기 및 매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상금을 부과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특히 사적복제의 범위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문제된 디지털 기기 및 매체의 대부분이 사적복제 이외의 용도로 이용된다면 동종의 디지털 기기 및 매체 전체에 대해서 그 배포가액의 일정비율을 확일적으로 보상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부당하고 재산권의 침해가 아닌가 하는 위헌의 소지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적복제보상금이 부과되는 복제의 범위를 보다 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정안은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가 모두 사적복제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사적복제의 대상이 된 저작물이나 실연 등에 대해서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을 보유한 자에 한정해서 보상금청구권이 부

[107]

여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넷째, 개정안은 디지털 복제기기 및 매체의 제조 및 수입업체에 대해서만 복제보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 일본처럼 아날로그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가 미미하거나 복제허락에 의해서 복제료의 자율적인 지급이 이루어지는 선진국에서는 타당하지만, 우리 나라와 같이 아날로그 복제기기에 의한 사적복제 및 무단복제가 학술발전의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격화소양의 소극적인 개정안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 V. 저작권의 등록

개정안은 저작권 등록사항을 확대해서 저작자의 성명뿐만 아니라 그 국적, 저작물의 제호, 창작연월일, 저작물의 종류, 공표한 국가 등도 등록사항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등록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또는 출판권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침해한 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

등록에 관한 개정안의 취지는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되지만, 그 취지가 실현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우선, 저작권법이나 하위 법령은 등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특허법 등의 산업재산권법과는 달리 등록의 실질적 요건이나 등록관청의 심사권한 및 심사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글자꼴(서체도안)에 관한 등록거절처분취소의 소송에서(주14)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동일한 문화관광부가 한번은 글자꼴에 대해서 등록을 해주고 다음에는 등록을 거절하는 모순된 등록업무를 수행한 것도 그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전문화되지 아니한 공무원이 등록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인 것이다.(주15)

개정안은 출판권의 등록에 관해서는 자구수정의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108]

저작물이용허락에 관한 등록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언급이 없다. 출판권도 저작물이용허락계약의 결과 출판업자가 가지게 되는 이용권의 하나에 불과하다면, 음반이나 기타 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에 대해서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저작물이용관계를 보다 명료하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출판권자뿐만 아니라 기타의 이용권자에게 저작권자에게 인정되는 금지청구권 등의 구제수단과 유사한 구제수단이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배타적 이용허락(exclusive licence)은 사실상 저작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타적 이용권은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고 배타적 이용권자에게는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금지청구권 등의 각종 구제수단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VI. 결 론

저작권법 개정안은 지난 4년 가량의 커다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작업으로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고 많은 기대를 받아왔던 개정안이다. 개정안이 몇 가지 중요한 제도개선을 시도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 구체적인 개선내용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중요한 제도개선에는 착수하지도 못한 미흡함이 있다. 특히, 금번의 저작권법 개정은 digital millenium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중요한 준비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저작물의 생산 급증과 통신망을 통한 저작물 유통의 급증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법규정의 도입이 결여되어 있다. 예컨대, 전송권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에서는 그와 관련된 아무런 개정을 하지 아니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다. 또한, 디지털저작물의 유통에 중요한 정보로 등장하게 된 "권리관리정보(right management

information)"의 보호는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저작권법 개정에서 빠져있다는 것은 중대한 입법적 미비점이다. 사실상 금세기의 마지막 개정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면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나라 문화산업의 장래에 어떠한 희망을 걸 수 있을까? 아직도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기까지는 4개월여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문화관

[109]

광부로서는 충분한 보완작업을 해서 보다 만족스럽고 보다 자랑스러운 digital millenium copyright 법률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

---

주1)

[대법원 1977.12.13 선고 77누76 판결](#)

주2)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642 판결.](#)

주3)

[대법원 1992.12.24 선고 92다31309 판결.](#)

주4)

[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판결.](#)

주5)

[대법원 1996.2.23 선고 94도3266 판결.](#)

주6)

[대법원 1997.2.11 선고 96도1935 판결](#)은 font프로그램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판시하고 있으나, font 자체가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한 것이다.

주7)

[서울고법 1992.10.9 선고 91나51711판결\(상고기각\)](#)

주8)

[서울지법 1998.9.21 98카합1699 결정](#)

주9)

9) Art 8 of WIPO Copyright Treaty, Arts 10 &14 of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주10)

"MP3 file"이라고 함은 MPEG layer-3라고 하는 압축기술의 도움으로 음악 등의 음성정보를 압축저장한 디지털파일이다 여기에서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은 음성·영상 정보를 압축하여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일련의 기술표준을 말한다. 여기에서 MP3 파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동 파일의 확장자로 압축기술의 명칭에서 유래된 확장자 xxxxx.mp3가 쓰여지기 때문이다.

주11)

참고로, 미국의 DMCA(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에 의해서 개정된 저작권법은 도서관 밖의 일반대중에게 이용가능하게 허용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17 U.S.C 108)

주12)

일본 저작권법 제30조 참조

주13)

독일 저작권법 제53조 및 제54조 참조

주14)

[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판결](#)

주15)

참고로 미국연방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이 제정한 시행령에서 상세한 심사기준과 절차규정을 두고 수십 명의 심사관을 두어 저작권등록심사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